

**물품구매 총액계약 규정개정  
설명자료  
['21.4.1. 시행]**

# 목 차

## [2021년 총액계약 규정 개정 안내]

1.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
2.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 
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
3. 물품 구매[제조]계약 특수조건
4. 내자구매 업무처리규정

#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

# 1 사회적 기업, 고용우수기업 등 가점 적용대상 확대

## 개정 이유

- ◆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가점 부여 필요
  - 정책지원 효과 강화, 신인도 심사기준에 통일성 부여

## 개정 내용

- ◆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서도 사회적기업,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해 가점 부여
  - 발주금액 구분 없이 적용되는 **공통 신인도 평가기준 [별표4]신설**

# 1 사회적 기업, 고용우수기업 등 가점 적용대상 확대

## [개정조항]

### 기존 규정

제6조(평가방법)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, 세부적용내용은 '[별표1], [별표2],[별표3]의 Ⅲ. 신인도 평가 [주]'에 따른다.



### 개정 규정

제6조(평가방법)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, 세부적용내용은 '[\[별표4\] 신인도평가 \[주\]](#)'에 따른다.

# 1 사회적 기업, 고용우수기업 등 가점 적용대상 확대

**기존 내용**

< 신인도 가점 평가기준 >

| 평가기준        | 별표1,2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별표3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신인도<br>심사항목 | 기술인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인증     |
|             |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지원     |
|             | 약자기업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고용창출<br>(고용우수기업,<br>고용형태 등)    | 고용형태 등   |
|             | 정책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|
| 배점한도        | +5 ~ -5점(별표1)<br>+3 ~ -2점(별표2) | +3 ~ -2점 |



**개정 내용**

< 신인도 가점 평가기준 >

| 평가기준        | 별표4(공통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인도<br>심사항목 | 기술인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약자기업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고용창출<br>(고용우수기업,<br>고용형태 등)      |
|             | 정책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배점한도        | +5 ~ -5점(별표1)<br>+3 ~ -2점(별표2,3) |

## 2 신인도 추가, 삭제 심사기준 신설

### 개정 이유

#### ◆ 신인도 평가요소에 대한 신설 및 삭제 기준 부재

- 공공성과 행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 기준 제시 필요

### 개정 내용

#### ◆ 신인도 평가요소의 추가 및 삭제 기준 신설

- 법적 근거, 대상기업 수, 정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여부 결정

## 2 신인도 추가, 삭제 심사기준 신설

### 신설 조항

제4조의2(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) ①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.

1. 법적 근거
2. 확인(지정)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
3. 산업과 시장의 반응
4. 정책의 중요도, 시급성
5.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

② 제1항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 다만,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(지정)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.

### 3 정책지원 신인도 가점 항목 정비

#### 개정 이유

- ◆ 도입 후 3년이 경과되었으나, 정책지원 효과가 미미한 등급의 정비 필요성
  - 정책지원 효과가 미미한 등급은 평가요소에서 삭제하여 신인도 적정성 확보

#### 개정 내용

- ◆ '세계일류상품인증', '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' 가점 일몰제 적용
  - 2022년 4월 1일 폐지(2020.3.31.까지 유효)

### 3

## 정책지원 신인도 가점 항목 정비

### 기존 규정

#### [별표1] Ⅲ. 신인도

| 심사항목/평가요소            |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점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|
| 마. 정책지원 /<br>부처별정책지원 | F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'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'          | 0.2 |
|                      | J.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'일·학습 병행제 참여기업'으로 선정된 업체 | 1.0 |



### 개정 규정

#### [별표4] 신인도

| 심사항목/평가요소            | 등급  | 평점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|
| 마. 정책지원 /<br>부처별정책지원 | F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'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' <2022.3.31.까지 유효>          | 0.2 |
|                      | J.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'일·학습 병행제 참여기업'으로 선정된 업체 <2022.3.31.까지 유효> | 1.0 |

[주] Ⅱ-⑤-5 : F.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, J.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2.4.1.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.

## 4 중복 가점 적용 축소

### 개정 이유

- ◆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요건에 대해 중복평가 효과가 있는 가점 항목 축소를 심사 변별력 강화

### 개정 내용

- ◆ 제조입찰의 경우, 제조기업에 대한 중복가점 평가 제외
- ◆ 중소기업, 기술인증으로 제한하는 경우, 해당 신인도 등급을 중복 평가하지 않도록 조문 명확화
  - 중소기업 제한경쟁 시 중기업, 소기업, 소상공인 추가 가점 제외
  - 기술인증 제한경쟁 시 해당 기술인증 평가 제외

# 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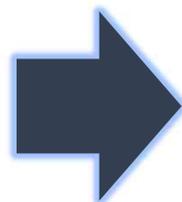
## 중복 가점 적용 축소

### 기존 규정

[별표1] - Ⅲ. 신인도

#### I. 신인도 평가 총괄

- ⑥ 중소기업(소기업, 소상공인, 중기업 등), 기술인증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된 경우 해당 항목은 평가하지 않는다.



### 개정 규정

[별표4] - Ⅲ. 신인도

#### I. 신인도 평가 총괄

-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(중기업, 소기업, 소상공인)으로 제한한 경우,  
 "나. 중소기업"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"B", "C"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"A", "B"는 평가하지 않으며,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 
 "나. 중소기업"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"A"의 "혁신형 기업 이면서 제조기업" 및 "B"는 평가하지 않는다.
-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인증으로 제한한 경우  
 "가. 기술인증"의 해당 '평가요소 및 등급'은 평가하지 않는다.

## 5 기타 경미한 사항

### 개정 이유

- ◆ 법령 및 규정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

### 개정 내용

- ① 국제입찰 시 평가항목 폐지된 “부정당제재” 항목 삭제
  - 부정당제재 감점 폐지(2010.10.1.)에 따른 조문 정비
- ② 창업기업 확인방법 추가
  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기업 확인서를 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(SMPP)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

**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 
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**

1

## 적격심사 /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 내용 비교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적격심사  | 계약이행능력심사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고시금액 미만<br>가점 적용대상 확대 | 공통 신인도 심사기준<br>[별표 4]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통 신인도 심사기준<br>[별표 5] 신설   |
| 활용성 낮은<br>가점부여 인증 삭제  |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,<br>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<br>일몰제 적용 <2022.3.31. 폐지> | 좌동   |
| 신인도 추가, 삭제<br>심사기준 신설 | 근거규정 신설   | 좌동   |
| 중복가점 적용 축소            | 제조업체, 중소기업, 기술인증 보유로<br>제한 시 중복 가점 평가 제외              | 중소기업, 기술인증 보유로<br>제한 시 중복 가점 평가 제외   |
| 기타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| ①국제입찰 시 부정당제재 평가항목 삭제<br>②창업기업 확인방법 추가                | ①국제입찰 시 부정당제재 평가항목 삭제<br>②창업기업 확인방법 추가<br>③조달업무우수기관 확인기관에 중소기업벤처부<br>장관 추가 |

# 물품구매(제조)계약 특수조건

# 1 부당이득 환수금 산정·부과 방식 전환

## 개정 이유

### ◆ 부당이득금 환수의 실효성 강화 필요

- 부당이득 환수금의 정확한 산정, 자료확보 등의 어려움 해소

## 개정 내용

### ◆ 불공정 조달행위 유형별로 위약금 산정기준 신설

- 환수금액 산정 시 위반업체에 소명자료 제출기회 부여
- 환수액 및 산정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
- 환수금보다 업체가 입힌 손해가 적을 경우 업체 증빙자료 제출 시 조달청에서 해당 차액분을 감액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

1

# 부당이득 환수금 산정·부과 방식 전환

## 개정안 도입 전·후 비교

| 구 분         | 도입 전                  | 도입 후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부당이득금 산정 주체 | 업체 제출 자료로 분석          | 부당이득 환수금 산정기준을을<br>계약조건으로 명시   |
| 손해 입증 주체    | 조달청                   | <b>불공정행위 업체</b><br>(환수액보다 업체가 입힌 손해가 적으면 업체가 증명자료 제시,<br>다만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 조달청이 입증)   |
| 특징          | 자료확보,<br>부당이득금 산정 어려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업체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이득금 환수 가능</li> <li>▪ 계약상대자에게 부당이득 환수금액에 대한 명확한 고지 필요 (* 입찰공고서, 계약서(특기사항) 표기)</li> </ul> |

# 1 부당이득 환수금 산정·부과 방식 전환

## 기존 규정

제12조(환수)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·계약체결·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조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.



## 개정 규정

제12조(환수)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·계약체결·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[별표1]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한다. 단, 총액계약의 경우에 [별표1]의 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국고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.

②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[별표1]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신설>

# 1

## 부당이득 환수금 산정·부과 방식 전환

### 기존 규정

제12조(환수)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~

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

### 개정 규정

제12조(환수)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~

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⑤ 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[별표1]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<신설>

**[별표1]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 <신설>**

| 부정한 행위의 유형   | 산정기준   |
|--|--|
| 1. 허위 서류, 위조·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        | <p>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.</p> <p>가.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*을 곱한 금액 / 나.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</p> <p>다.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</p>   |
| 2.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| <p>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. 단,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(이윤을 제외한다)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.</p>  |
| 3.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.</p> <p>단,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(이윤을 제외한다)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. 단,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,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(이윤을 포함한다)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.</p>   |
| 5.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| <p>계약단가*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. 단,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(제조)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정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.</p> <p>*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,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</p> |
| 6. 기타 관련 법령,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| <p>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*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</p>   |

#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

## 1 입찰공고에 부당이득 환수 근거 마련

### 개정 이유

#### ◆ 부당이득 환수금 산정 및 부과방식 변경

- 부당이득금 환수 방식을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도록 변경,
- 부당이득 환수 사항을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사전안내 필요

### 개정 내용

- ◆ 입찰 공고에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

# 1 입찰공고에 부당이득 환수 근거 마련

## 기존 규정

제32조(공고의뢰) ③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1. ~ 9. (생략)
10. 청렴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
11.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12. 조달사업법 제14조 및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7조에 다른 공공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련된 사항



## 개정 규정

제32조(공고의뢰) ③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1. ~ 9. (생략)
10. 청렴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
11.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
12. 조달사업법 제14조 및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7조에 다른 공공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련된 사항
13.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## 2 기타 경미한 사항

### 개정 내용

- ① "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" 약칭 수정
  - (당초) '구축법', '구매촉진법' → (개정) '판로지원법' 으로 통일
- ② 정부 직제 변경 사항 반영
  - (당초) '중소기업청장' → (개정) '중소기업벤처부 장관' 으로 수정

# [문의]

## < 총액계약 제도 총괄 >

구매총괄과 사무관 : 042-724-7302

구매총괄과 주무관 : 042-724-7259

## < 법령 유권해석 >

전문위원 : 042-724-7043

감사합니다